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6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홍배・김정호

민병덕 · 송옥주 · 민형배

서영교·백승아·박 정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, 기업,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,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, 기업,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
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②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		
	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		
	수립·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,		
	기업,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		
	<u>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		
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	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		
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8의2.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		
	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		
	<u>사항</u>		
9. ~ 10. (생 략)	9. ~ 10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